



합의 및 취하

합의

조세심판국(The Office of Tax Appeals, OTA)은 사건을 합의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세무 기관이 합의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동의한 경우, OTA에 연락해야 합니다. OTA는 합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귀하의 항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유보합니다. 세무 기관과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귀하는 자발적으로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기타 노력으로 항소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OTA는 항소를 재개하고 귀하 및 해당 기관에 항소 절차의 다음 단계를 통지합니다.

항소 취하

귀하는 어떠한 사유로든 언제든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문(Opinion)이 발행된 후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OTA는 귀하의 항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문을 게시합니다.

California 주 조세수수료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 또는 프랜차이즈 세무국(Franchise Tax Board, FTB) 합의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